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보험 등의 가입 정보 요청 및 공개 근거 마련 >

■ 배현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35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보험 등의 가입 정보 요청 및 공개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배현진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2026. 3. 9.

다. 회 부 일: 2026. 3.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7월 후불제 여행상품으로 4천 명에게서 120억 원대 적립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여행사가 잠적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여행 폰지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여행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 및 공개하여, 소비자가 상품 결제 전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로부터 여행사 보험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수만 개 여행사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로부터 여행사의 보험 가입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결제 전 보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함으로써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여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보험 등의 가입 정보 요청 및 공개 근거 마련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①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사업자의 보험 등 가입 여부를 조사·관리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보험협회 등에 보험 등의 가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제공받은 보험 등의 가입 정보를 국민 및 관계 행정청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9조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2(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①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험 가입 등과 관련한 조사·관리를 위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 또는 「보험업법」 제17조제1항의 보험협회 등에 보험 가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장·군수

현행	개정안
	·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보험 가입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한 후 이를 국민 및 관계행정청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가입 등의 정보 수집·관리 및 공개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검토사항

현행법¹⁾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대한 가입을

1)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이하 “보험 가입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4조(여행계약 등)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여행업자는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 3의2. (생략)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 6. (생략)

7. 제14조를 위반하여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여행계약서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8. ~ 20. (생략)

② ~ ⑦ (생략)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여행업자의 경우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도록 하고, 관광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을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규칙²⁾은 관광사업자 중 여행업자 및 야영장업자에 대해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여행업자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제17조제1항에 따라 휴업을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휴업을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휴업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② 여행업자 중에서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기획여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기획여행 사업을 하는 동안(기획여행 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여행 사업을 하려는 자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제17조제1항에 따라 휴업을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휴업을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획여행 휴업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행업자가 가입하거나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규모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영업보증금의 예치 및 그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⑦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6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여행업자의 경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여행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 등의 기간 만료 전에 여행업자에게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갱신 안내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의3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 ⑧ 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공제는 하나의 사고로 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7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7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2.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제7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7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3. 제7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7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7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
-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여행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등의 기간 만료 전에 여행업자에게 별지 제47호서식의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갱신 안내서를 발송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체계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가 여행업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여행업자의 보증보험 등의 미가입 또는 미갱신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여행상품 선택 전에 여행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보험협회 등에 보험 등의 가입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제공받은 보험 등의 가입 정보를 국민 및 관계 행정청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사업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여행사 선택권 보장을 통해 보험 등의 의무가입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안 제9조의2 조제목은 ‘보험등’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행법³⁾은 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를 ‘보험등’으로 약칭하지 않고 ‘보험 가입 등’으로 약칭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3)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이하 “보험 가입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은 보험 등의 가입 정보 요청 및 공개 주체로 ‘문화체육관광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권한과 사무의 행사주체가 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가입 정보를 일괄 제공받아 미가입·미갱신 여행사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행정지도 또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안전한 여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② 소비자가 여행사 선택 시 보증보험의 가입 여부를 직접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7